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30172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24. 12. 5.

판결 선고2024. 12. 19.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130,808원 및 그 중 113,232,954원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2024. 7. 29.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24.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24. 2. 8. 접수 제11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홍도

별지